

감 사 규 정

제정 1987. 4. 1 개정 2015.11. 4
개정 2008. 1. 1 개정 2018. 3. 2
개정 2014. 3.14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감사에 관한 직무 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의 감사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 (개정: 2015.11.4.)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: 2008.1.1.) (개정: 2015.11.4.)

1. ‘감사부서’는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, 결과보고 등 감사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2. ‘피감사부서’는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감사를 받는 부서를 말한다.
3. ‘감사인’은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 감사인은 감사부서 소속직원과 타 부서에서 감사반에 차출된 직원 및 기간을 정하여 영입한 외부인을 포함한다.

제4조(감사의 범위)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대학의 회계업무(수입과 지출, 재산의 취득, 보관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포함)
2. 본 대학의 연구업무(수입과 지출, 계약, 정산,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포함)
3. 주요 계약업무
4. 각 부서의 행정업무
5.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업무

제5조(감사의 구분) ①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, 일상감사로 구분한다. (개정: 2008.1.1.)(개정: 2015.11.4.)(개정: 2018.3.2)

② 일반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대학 업무전반 또는 조직단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. (개정: 2015.11.4.)(개정: 2018.3.2)

③ (신설: 2008.1.1.)(삭제: 2015.11.4.)

④ 특별감사는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비위사항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.(신설: 2015.11.4.)(개정: 2018.3.2)

⑤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시행 또는 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. (신설: 2015.11.4.)(개정: 2018.3.2)

제 2 장 감사부서와 감사인

제6조(감사부서) 본 대학의 감사업무는 감사실에서 관장하며, 감사실장이 통할한다.

제7조(감사의 독립원칙)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기관 또는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한 태도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감사인의 자격)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.(신설: 2018.3.2)

1. 공인회계사
2.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3.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9조(감사인의 의무)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(신설: 2018.3.2)

1. 감사인은 감사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, 성실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2. 감사인은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.
3. 감사인은 감사 시 알게 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 3 장 감사계획 및 실시

제10조(감사계획)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,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신설: 2018.3.2)

1. 감사배경
2. 감사대상
3. 감사일정
4. 감사인 명단

제11조(서류의 제출) 각 부서장은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 (개정: 2008.1.1)

1. 제 장부, 연구계약서, 증빙서,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
2. 각종 결의서 및 품의서의 열람

3. 참고, 금고, 장부, 물품 등의 봉인

4.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

제12조(감사방법) ① 감사방법은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,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감사로서 대신할 수 있다. (개정: 2018.3.2)

②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(신설: 2018.3.2)

제13조(감사반의 구성) ① 감사부서 인력으로 감사실시가 어려운 경우 타부서 또는 외부인으로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. (신설: 2018.3.2)

② 타부서 또는 외부 감사인은 제8조의 감사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한 태도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(신설: 2018.3.2)

제14조(피감사부서의 협조) 피감사 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, 출석 또는 답변을 하는 등 감사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4 장 감사결과보고 및 사후관리

제15조(감사보고서) ① 감사부서장은 감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, 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: 2008.1.1.)(개정: 2015.11.4.)

② (신설: 2008.1.1.)(삭제: 2015.11.4.)

③ (신설: 2008.1.1.)(삭제: 2015.11.4.)

제16조(감사보고서 내용) ① 감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(개정: 2008.1.1.)

1. 감사실시 기간

2. 피감사 부서명

3.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

4. 주요 감사내용

5. 시정사항 또는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6. 건의사항

7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(신설: 2008.1.1.)(삭제: 2015.11.4.)

제17조 (감사처분의 종류) ① 감사처분은 신분상 처분, 재정상 처분 및 행정상 처분으로 구분한다.(신설: 2018.3.2)

1. 신분상 처분은 징계, 경고, 주의로 구분한다.

2. 재정상 처분은 변상, 시정으로 구분한다.

3. 행정상 처분은 개선, 권고, 통보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의 감사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(신설: 2018.3.2)

1. 징계: 법령이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인사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2. 경고: 비위 정도가 징계에는 미달하고 주의 처분을 하기에는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
3. 주의: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나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
4. 변상: 대학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변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
5. 시정: 규정을 위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추징, 회수, 원상회복 등이 필요한 경우
6. 개선: 규정 또는 제도 등이 없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
7. 권고: 문제점 등에 대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경우
8. 통보: 다른 처분의견으로는 부적합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

제18조(감사결과와 통보) ① 감사부서장은 결과 보고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해당 부서에 후속조치 요청을 하여야 한다.(신설: 2015.11.4.)(개정: 2018.3.2)

② 후속조치 요청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(개정: 2008.1.1.)(개정: 2015.11.4.)(개정: 2018.3.2)

제19조(사후관리) 감사부서는 제18조의 감사결과 후속조치 요청 사항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(개정: 2008.1.1)(개정: 2018.3.2)

제20조(이의신청) ① 제18조의 후속조치 요구에 이의가 있는 부서장은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후속조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(개정: 2018.3.2)

② 해당 감사부서의 처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(개정: 2008.1.1)

제21조(신고자 보호) 신고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그 신분을 보장하고 비밀을 보장한다. (신설: 2018.3.2)

1. 신고자는 비위사실 등을 신고한 사실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 차별, 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 등을 받지 아니한다.
2.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3. 신고자와 관련된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자의 감사처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단, 제5조 제2항의 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